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2008. 5

전 병 목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 일 시 2008. 5. 7(수) 16:00~18: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6:00~16:10 인사말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6:10~17:40 주제발표 및 토론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발표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토론자 김낙희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 안중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협회 회장(서경대 교수)
-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가나다순)

17:40~18: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8:00 폐회

목 차

I. 배 경	1
II.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1. 조세부담 수준	4
2. 세원구성	10
3. 주요 세목별 구조	14
가. 소득세	14
나. 법인소득세	20
다. 부가가치세 등	24
III. 해외조세 개혁동향	27
1. 전반적 동향	27
2. 주요 국가별 조세개혁 동향	33
가. 미 국	33
나. 독 일	35
다. 일 본	37
라. 영 국	40
마. 기타 국가	43
3. 시사점	45
IV. 조세개혁 방향	46
참고문헌	52

표 목 차

<표 II-1> 우리나라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6
<표 II-2> 조세/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05년)	6
<표 II-3> 2007~2011 중장기 재정전망	7
<표 II-4> 통합재정수지 추이	8
<표 II-5> 세입예산 대비 국세징수 실적	9
<표 II-6> 세원별 조세수입 비중 추이	11
<표 II-7> 세원별 조세수입의 국제비교(2005)	12
<표 II-8> 재산과세 수입구조의 국제비교(2005)	12
<표 II-9>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추이	19
<표 II-10> 과표구간별 납세자분포	20
<표 II-11> 주요국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수 대비) 비교	23
<표 II-12> 법인부문의 크기, 이익률 그리고 평균세율	23
<표 II-13> 주요 국가별 VAT 효율성(2003)	25
<표 III-1> 미국의 재정 및 경제 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34
<표 III-2> 독일의 재정 및 경제 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35
<표 III-3> 법인세 인하계획	37
<표 III-4> 일본의 재정 및 경제 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38
<표 III-5> 개인소득세의 세율구조	38
<표 III-6> 주민세의 세율구조	39
<표 III-7> 영국의 재정 및 경제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42
<표 III-8>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43
<표 III-9> 연방법인세율 인하 계획	44

그림 목차

[그림 II-1] OECD 국가들의 재정규모 및 수지(2006년)	5
[그림 II-2] 소득세 최고세율과 적용구간(2006)	15
[그림 II-3]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비교(2006)	16
[그림 II-4] OECD 국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2007)	17
[그림 II-5] OECD 국가의 개인소득 관련 세부담(2005)	18
[그림 II-6]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2006)	21
[그림 II-7]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2005)	22
[그림 II-8] OECD 국가들의 재산과세 부담(2005)	26
[그림 III-1]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추이	28
[그림 III-2] OECD 주요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변동	29
[그림 III-3] OECD 주요국의 법인소득세율 변동	30
[그림 III-4] OECD 주요국의 배당소득세율 변동	31
[그림 III-5] OECD 주요국의 소비세율(VAT) 변동	32

I. 배경

-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자본의 이동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간 조세 경쟁, 2000년대 이후 낮아진 성장잠재력의 강화 필요성 및 2006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초과세수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위한 세제의 역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시장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강화와 성장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
 - 향후 높아질 복지수요를 성장의 촉진을 통한 고용과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세원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감당하겠다는 전략
 -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자본의 경우 경제활동의 세계화, 금융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정책을 통한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해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단일시장을 형성한 EU의 경우, 국가간 자본 및 인력이동의 제약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본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여 법인세율 등의 인하 추세가 지속
 - 이러한 자본유치 경쟁은 향후 FTA 등에 따라 시장접근성이 높아질 아시아지역에서도 예상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국내적으로는 서브프라임 신용위기,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
 - 미국 서브프라임 신용위기로 인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는 최근의 원자재값 폭등과 함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성장과 안정적 세원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공공재원 확보라는 조세의 기본적 기능 측면에서도 2006년 이후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세수가 확보됨에 따라 이를 민간부문으로 환류할 필요성 존재

- 정부예산을 상회하는 세수징수는 필요 이상으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

□ 저출산과 평균수명 향상에 따른 고령화, IT기술의 발달 등은 조세정책 운용의 효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개발이 필요

- 저출산과 고령화는 장기적인 재정지출의 증대를 야기하여 세부담 증대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의료비용(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소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의 조달이 중요한 정책과제
 - 지출부문의 경우 개인의 책임성 강화 등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수입부문은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IT기술의 발달은 국가 및 납세자의 정보수집 등 납세관련 비용 축소를 가능케하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

□ 따라서 이러한 납세와 관련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기여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세부담 수준과 재정소요, 세원구성, 세율수준 등에 대해 검토

- 다음으로 외국의 최근 조세개혁 동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

II.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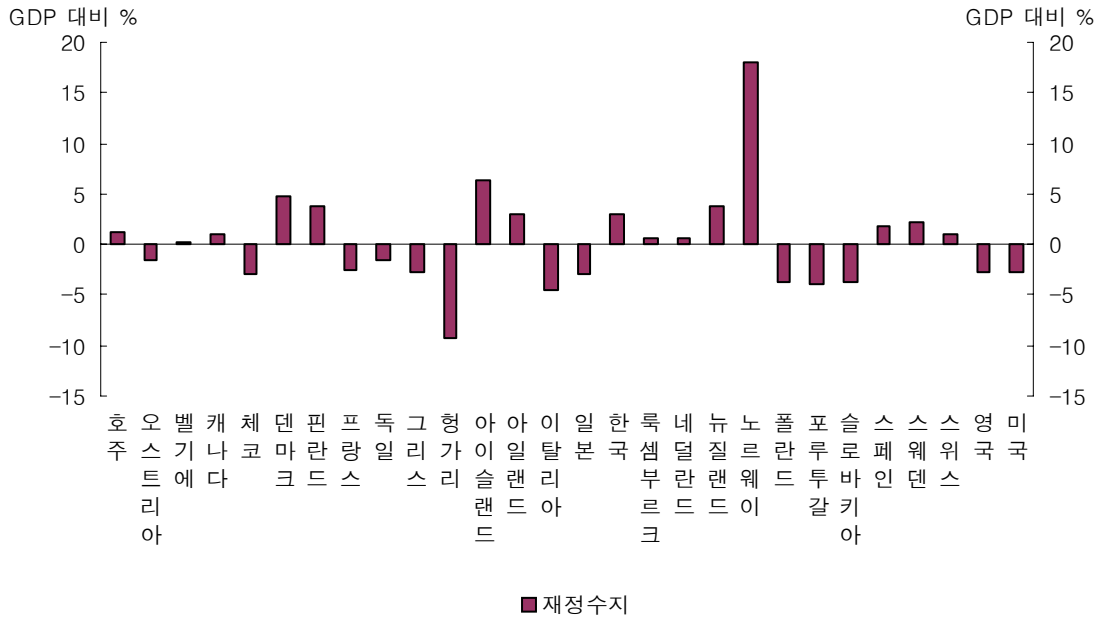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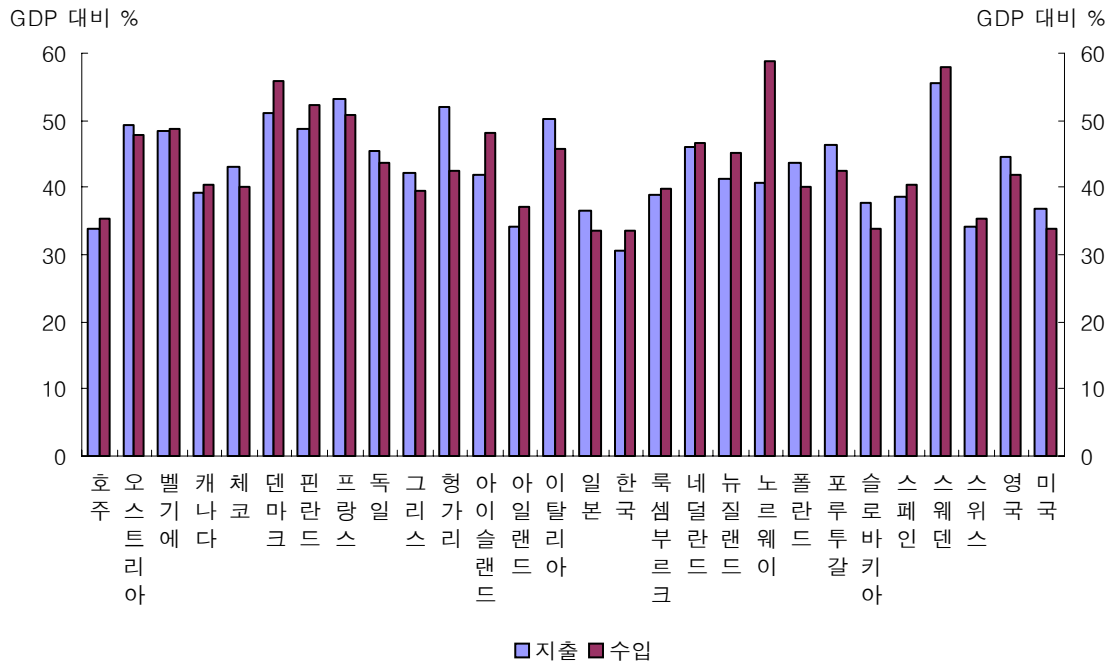
1. 조세부담 수준

-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2006년 기준 GDP 대비 30.5%(일반정부 기준)로서 OECD 2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재정수지도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
 -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조달도 활발하여 2006년 기준 33.5%로서 3.0%p의 재정수지 흑자를 시현
 - 재정수지 흑자는 적립단계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에 따른 효과를 제외할 경우(즉 관리대상수지), 소폭 적자
 - OECD 국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지균형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재정적자를 보임.
 -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므로 실질 국민부담은 현재 수준보다 높음을 의미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0년대 들어 20% 내외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07년 22.7% 수준까지 증가
 -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의 꾸준한 증가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후 조세부담률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28.6% 수준으로 예상
 - OECD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2005년 36.2%, 가중평균 32.1%)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나 미국, 일본 등의 27.3%, 27.4%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정책적 주의가 필요
 - 그러나 미국·일본은 재정적자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규모(미국 3.7%, 일본 6.5%)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은 높은 수준

[그림 II-1] OECD 국가들의 재정규모 및 수지(2006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7.

<표 II-1> 우리나라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20.2	21.1	22.7
국민부담률	23.6	24.1	24.4	25.3	24.6	25.5	26.8	28.6

주: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2007년은 기획재정부 추정치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표 II-2> 조세/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05년)

(단위: %)

구 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OECD
조세부담률	20.2	20.6	17.3	27.8	20.9	28.4	29.6	26.9
국민부담률	25.5	27.3	27.4	44.1	34.8	41.0	36.5	36.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7~2011년 중에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조세부담률이 2007년보다 소폭 낮아진 22%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수준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한국조세연구원도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약 21~22%)으로 유지하는 경우 향후 국가채무비율을 소폭 낮추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최근의 높은 세수증가세를 감안하면 부담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표 II-3> 2007~2011 중장기 재정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07	'08	'09	'10	'11	증가율
총수입	250.6	274.2	291.7	311.7	333.9	7.4
- 총국세	148.1	167.5	178.9	192.8	208.7	8.9
총지출	238.4	257.3	274.1	292.1	311.2	6.9
통합재정수지	12.2	16.9	17.6	19.6	22.7	-
(GDP 대비 비율)	(1.4)	(1.7)	(1.7)	(1.8)	(1.9)	-
사회보장수지	27.0	28.0	28.4	29.6	30.0	-
관리대상수지	-14.8	-11.1	-10.8	-9.9	-7.4	-
(GDP 대비 비율)	(-1.6)	(-1.1)	(-1.0)	(-0.9)	(-0.6)	-
국채규모	302.0	318.8	335.3	353.3	369.1	-
(GDP 대비 비율)	33.4	32.9	32.3	31.8	31.0	-
조세부담률	22.2	21.8	21.7	21.8	21.9	-
국민부담률	28.0	27.6	27.5	27.4	27.4	-

주: 2006년은 예산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7~2011 국가재정운영계획』, 2007.

- 최근 재정수지는 초과세수의 영향으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7년 관리대상수지가 과거 적자추세에서 벗어나 3.6조원(GDP 대비 0.4%) 흑자로 전환
 - 적립단계에 있는 사회보장기여금 수지를 포함한 재정수지는 33.8조원 흑자로 GDP 대비 3.8% 수준에 이름.
 - 이미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상당한 재정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수지의 흑자는 민간부문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표 II-4>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총수입	191.4	209.6	243.6
총지출	187.9	205.9	209.8
재정수지 (GDP 비중)	3.5 (0.4)	3.6 (0.4)	33.8 (3.8)
관리대상수지 (GDP 비중)	-8.1 (-1.0)	-10.8 (-1.3)	3.6 (0.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최근의 국세징수 실적은 2004년과 2005년에 세입예산에 미달하다가 2006년 이후 세입예산을 초과하기 시작
 - 2006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로 인한 소득세 증가(3.3조원) 등 일시적 요인으로 2.7조원 초과징수
 - 2007년에는 일시적인 요인(7.1조원)과 함께 경기회복 및 그간의 과표양성화 노력 등으로 총 14.2조원 초과징수
 - 2006년 말에 공휴일인 관계로 발생한 납세이월(3.0조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 실시 직전인 2006년 말 부동산 거래 급증에 의한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급증(3.0조원) 등

- 세입예산 초과분의 대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에서 발생하여 민간부문의 부담이 증대
 - 2007년 14.2조원 중 소득세 6.1조원, 법인세 4.9조원
 - 세목별 조세효율성 분석에 따르면 소비세보다 소득세의 왜곡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1-5> 세입예산 대비 국세징수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본 예산	95.9	103.6	113.6	122.1	130.6	135.3	147.3
추경예산	-	-	114.9	-	1,27.0	-	-
실 적	95.7	104.0	114.7	117.8	127.4	138.0	161.5
실적-본예산	△0.2	+0.3	+1.0	△4.3	△3.1	+2.7	+14.2
실적-추경예산	-	-	△0.3	-	+0.4	-	-
경제성장률(%)	3.8	7.0	3.1	4.7	4.2	5.0	4.9

- 한 나라의 재정규모 및 이에 필요한 조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
 - 2006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재정지출(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구를 포함하는 일반정부 기준) 규모는 평균 43%인데, 최저 30.5%(한국)에서 최고 55.6%(스웨덴)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조세부담이 인프라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실정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보다 취약한 복지수준, 준조세성 법정부담금, 향후 예상되는 사회보장 관련 부담 증가, 의무병역 등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체감부담률이 낮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존재
 - 법정부담금은 2006년 기준 GDP 대비 1.4%에 달하고, 현재 국민연금이 적립단계에 있어 기여율(9.0%)에 비해 연금지급 규모가 작아 체감 국민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향후에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율 상향, 건강보험 관련 부담의 지속적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 조세부담률만 고려하여 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

- 다만 세계화 등으로 인한 국가간 차별성의 약화가 과거보다 조세부담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
 - Reed(2008)¹⁾에 따르면 미국 주별 분석에서 세부담 수준은 유의미하게 개인소득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세부담 수준을 가능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최근과 같은 소득세, 법인세 중심의 초과세수를 통한 세부담 증가는 노동공급 및 이용, 민간소비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의 큰 변화는 복지지출 등 정부지출의 적정수준과 연계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할 것임.

2. 세원구성

- 조세수입을 소득과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비과세, 재산과세 등 세원(tax base)별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사회보장:소비:재산과세의 비중이 29:21:34:12로 소비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소비과세의 비중은 1980년 62.7%에서 2005년 34.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는데, 이는 주로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개별소비세의 수입비중 감소에 기인
 -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음.
 - 다음으로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서 1980년 1.1% 비중에서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함께 2005년 21.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

- 세원별 조세수입 구조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낮은 반면 소비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상

1) W. Robert Reed(2008), The Robust Relationship between Taxes and U. S. State Income Growth, *National Tax Journal*, Vol. LXI, No. 1.

대적으로 높은 구조

- 소득과세 중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이 13.3%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17~35%에 비해 낮음.
 -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음을 시사
- 소비과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개별 소비세의 영향
 - 개별소비세의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세수비중은 높은 수준

<표 II-6> 세원별 조세수입 비중 추이

(단위: %)

	'80	'85	'90	'95	'00	'04	'05
소득과세	25.5	26.4	34.6	31.9	28.8	27.9	29.3
· 개인소득	11.5	13.4	21.1	19.2	14.6	13.6	13.3
· 법인소득	11.0	11.4	13.5	12.3	14.1	14.3	16.0
사회보장기여금	1.1	1.5	5.1	7.0	16.7	20.7	21.0
급여세	0.5	0.5	0.4	0.3	0.2	0.2	0.2
소비과세	62.7	59.5	46.7	43.1	38.3	36.3	34.3
· 일반소비	22.0	21.1	19.7	18.9	17.0	18.0	17.5
· 개별소비	39.5	37.4	25.7	21.9	19.7	17.3	15.9
재산과세	8.0	9.1	12.4	14.8	12.4	11.3	11.9
기타	2.2	3.0	0.8	2.9	3.6	3.6	3.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구조는 주요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인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고용주의 부담이 월등한 구조
 - 이는 상대적으로 큰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부문에서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부담이 크기 때문임.

<표 11-7> 세원별 조세수입의 국제비교(2005)

(단위: %)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소득과세	29.3	46.5	23.5	28.2	33.8	31.5	38.5
· 개인소득	13.3	35.1	17.3	23.3	18.3	25.5	28.6
· 법인소득	16.0	11.4	6.2	4.9	15.5	6.8	9.3
사회보장기여금	21.0	24.7	37.0	39.9	36.8	30.8	18.8
· 근로자	12.1	10.8	9.2	17.4	15.9	5.5	7.8
· 고용주	8.9	12.6	25.0	19.2	16.7	21.4	10.4
급여세	0.2	0.0	2.7	0.0	0.0	0.0	0.0
소비과세	34.3	17.4	25.3	29.0	19.4	26.4	30.3
· 일반소비	17.5	8.0	17.1	18.0	9.5	14.6	18.6
· 개별소비	15.9	6.6	7.6	9.9	7.7	9.2	10.5
재산과세	11.9	11.4	7.8	2.5	9.7	5.0	12.0
기타	3.2	0.0	3.5	0.0	0.3	5.9	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상대적으로 재산과세에 대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세 중심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거래세의 비중이 높음.
- 부동산세의 비중은 전체 세수입의 2.4%에 불과하여 미국, 일본의 10.5%, 7.4%에 비해 낮은 수준
 - 반면 거래세 비중은 8.6%로 다른 선진국들의 3배 이상 수준임.
 - 이는 유가증권 등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기능이 약하고 대신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

<표 11-8> 재산과세 수입구조의 국제비교(2005)

(단위: %)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재산과세	11.9	11.4	7.8	2.5	9.7	5.0	12.0
· 부동산세	2.4	10.5	4.9	1.3	7.4	2.0	9.1
· 부유세	0.0	0.0	0.4	0.0	0.0	0.0	0.0
· 상속증여세	0.9	0.9	1.2	0.5	1.2	0.0	0.7
· 거래세	8.6	0.0	1.4	0.6	1.2	2.5	2.2
· 기타재산세	0.0	0.0	0.0	0.0	0.0	0.5	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OECD(2008)²⁾에 따르면 동일한 세원을 조달함에 있어 성장에 유리한 세원구조는 소득과세의 비중을 줄이고 왜곡효과가 적은 세원으로 이동하는 것임.
 - 가장 성장친화적인 세원은 주거자산으로 재산과세 중 부동산세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는 주로 지방정부의 세원이며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정폭에는 한계
 - 다음으로는 소비과세의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과세 중에서는 개인소득과세, 기업소득과세의 순으로 왜곡효과가 높아짐
 -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의 상충관계를 이해하여야 함.
 - 개인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원 이동은 세부담의 누진성을 완화하게 될 것이며, 법인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이동은 자본과세를 낮춤으로써 주식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부의 불균형,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

- 현재 우리나라 세수구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득과세의 비중이 낮고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 보다 성장친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개선 과제도 존재
 - 가장 왜곡효과가 심한 법인소득과세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부분적인 세원구조조정이 필요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소득과세 비중을 축소하여 성장친화적인 세원구조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임.
 - 소득과세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OECD, Tax and Economic Growth, ECO/CPE/WP1(20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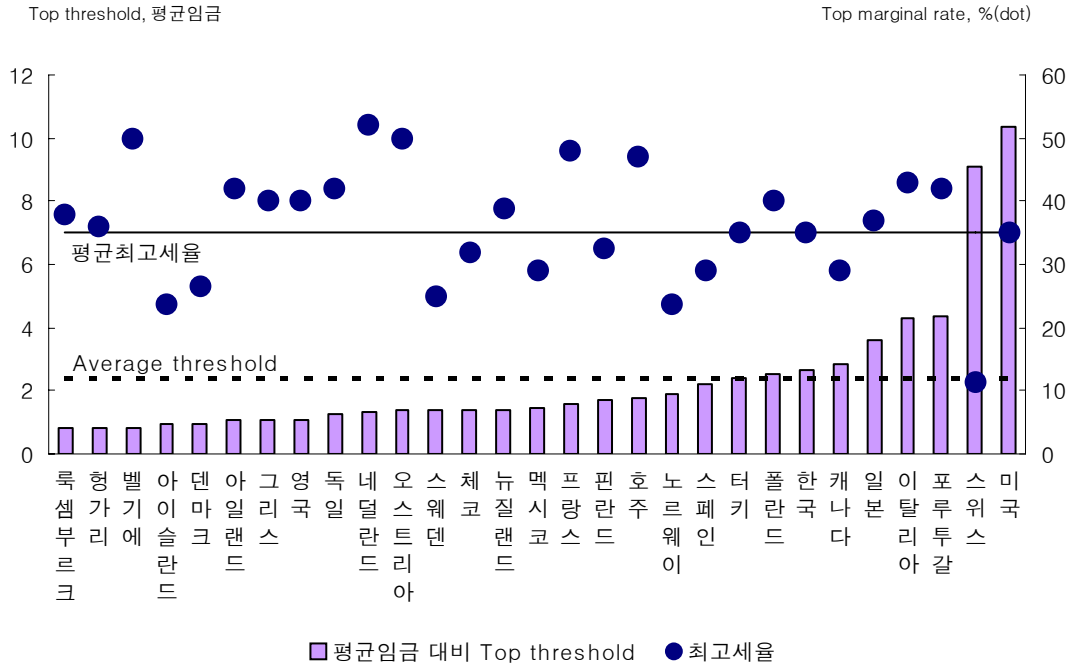
- 만약 세수비중이 하락한다면 저소득 계층을 목표로 한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구조는 선진국들과 달리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사회보험제도 편입에 어려움 존재
 - 근로자들의 위험회피를 위해 자영업체의 사회보험제도 편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세수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환경, 건강 등 외부비용 교정의 목적으로 전환하고 세수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세목별 구조

가. 소득세

- 우리나라 중앙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2006년 OECD 국가 평균 35.1%와 거의 동일한 수준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2.6배로 OECD 평균 2.4배와 유사한 수준
 - 그러나 OECD 평균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미국, 스위스에 의해 크게 높아졌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 1.8배 수준에 불과
 - 이는 평균임금수준을 넘어서면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유럽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한계세율이 서서히 높아지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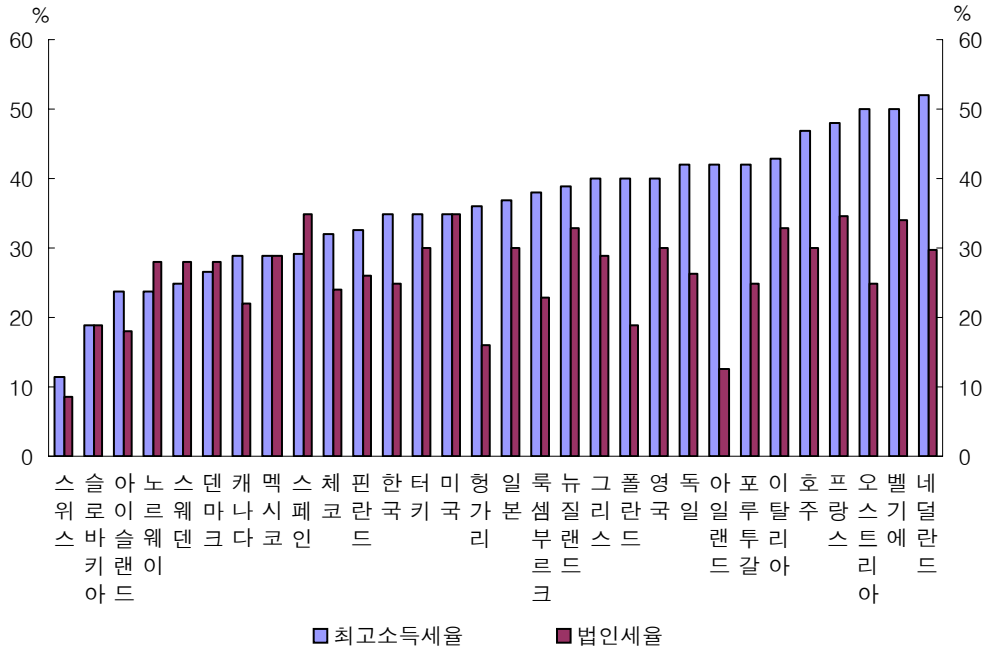
[그림 11-2] 소득세 최고세율과 적용구간(200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Taxing Wages, 2007.

- 소득세율은 소득이동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소득세율과의 균형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을 경우,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을 법인 내부에 유보하여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 존재
 -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는 10%p로 OECD 국가 평균인 9.6%p와 유사한 수준
 - 비교적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소득과세의 균형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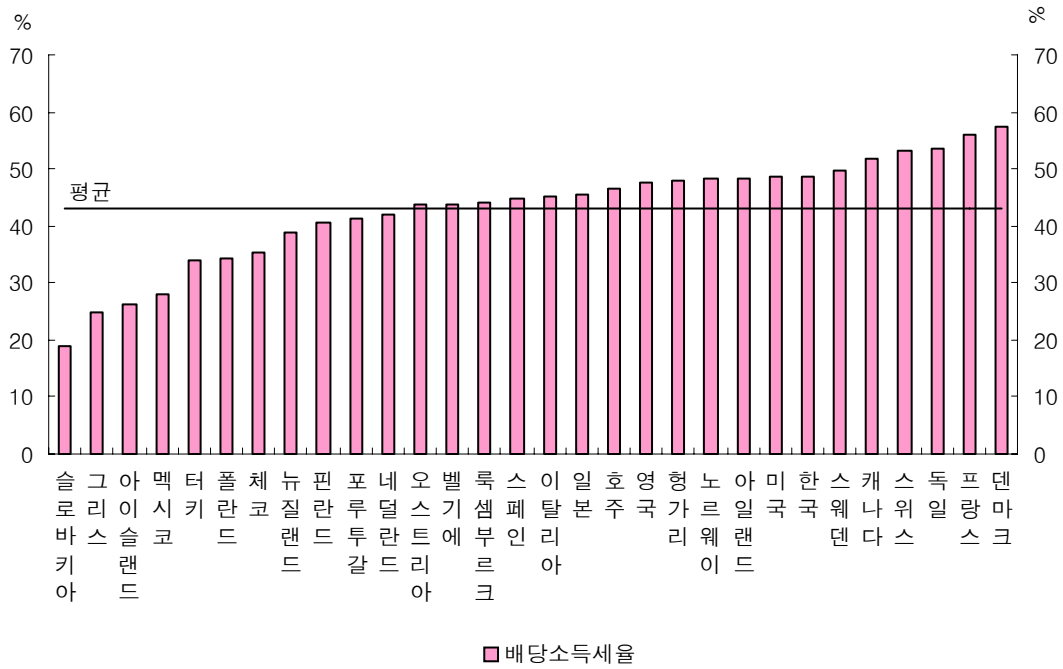
[그림 II-3]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비교(2006)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본투자에 대한 최종 세부담을 나타내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우리나라가 2007년 기준 48.7%로 OECD 평균 42.9%보다 높은 수준
 -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지 않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과세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 세부담이 선진국들보다 높음을 의미
 - 창업 등 신규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 소득세율의 조정에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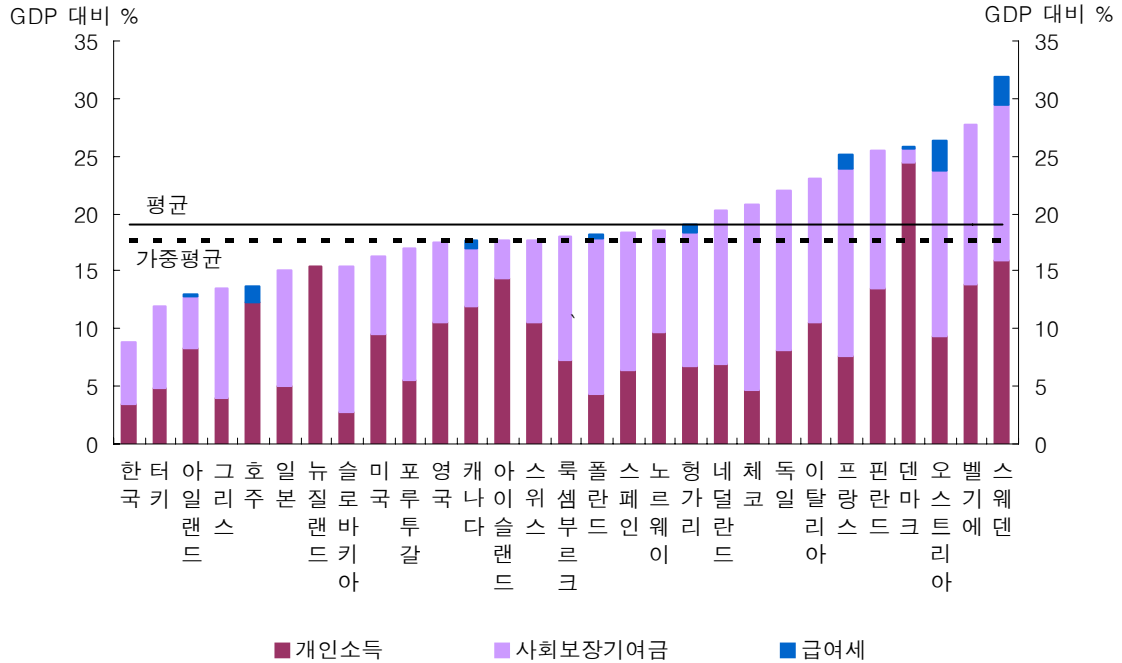
[그림 II-4] OECD 국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2007)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개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노동과세 부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한 29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총노동 관련 세부담은 GDP 대비 8.9%로 OECD 국가 평균 19.0%(가중평균은 17.6%)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세제를 가진 일본은 15.1%이며 미국은 16.3%, 영국은 17.5% 수준
 - 이는 노동 관련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효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음을 의미
 - 노동과세의 구성은 개인소득세 3.4%, 사회보장기여금 5.4%로 OECD 국가 평균인 9.2%, 9.5%와 비교해 볼 때,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비례제 형태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큰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소득형평성 측면에서는 한계

[그림 II-5] OECD 국가의 개인소득 관련 세부담(200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은 2000년 이후 세율인하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세율인하가 없는 경우 매년 0.2%p 정도 증가
 - 소득세 평균세율은 2000년대 5% 중반대로 일정한 수준
 -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약 3.5%내외, 종합소득세는 14%~15% 수준
 - 2002년, 2005년의 세율인하 시기를 제외하면 소득세 부담률은 매년 0.2%p 정도 증가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
 - 과세자 비중의 개선이 없을 경우, 납세자 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그 정도는 누진적 세율구조로 인해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
 - 2007년 소득세수(근소+종소)는 20.3조원으로 2006년 대비 18.7% 증가

<표 11-9>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근로소득세	3.6	3.7	3.2	3.3	3.6	3.5	3.6
· 과세자비율	53.4	55.8	51.5	54.3	53.9	51.3	52.6
종합소득세	14.9	15.2	13.6	13.9	14.1	13.7	14.2
· 확정신고자비율	46.4	46.8	48.3	50.0	51.2	52.2	59.7
합 계	5.4	5.6	4.9	5.1	5.3	5.2	5.4

주: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급여총계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종합소득세 부담률은 과세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 소득세 부담증가의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전반적 세율 인하가 노동시장 왜곡 축소, 지분투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 또한 소득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 계층의 세부담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동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 편중

- 소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납세자 비중 증대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누진율 구조 하에서도 좁은 과세기반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

<표 II-10> 과표구간별 납세자분포

(단위: 천명, 십억원, 천원, %)

과세표준	1996년 귀속소득			2006년 귀속소득		
	인원	결정세액	1인당 세액	인원	결정세액	1인당 세액
과세미달자	2,953(29.8)	0(0.0)	0	5,974(47.4)	0(0.0)	0
0~1천만원	5,322(53.7)	962.7(19.9)	181	3,563(28.3)	564.0(4.9)	157
1천만~4천만원	1,579(15.9)	3,101.6(64.1)	1,964	2,665(21.2)	5,231.9(45.2)	1,963
4천만~8천만원	50(0.5)	481.2(9.9)	9,625	323(2.6)	2,774.2(24.0)	8,578
8천만원 초과	7(0.1)	292.4(6.0)	41,777	69(0.5)	2,996.3(25.9)	43,686
과세자 합계	6,958(70.2)	4,837.9(100)	695	6,621(52.6)	11,566.4(100)	1,747
전체근로자	9,911(100)	4,837.9(100)	488	12,595(100)	11,566.4(100)	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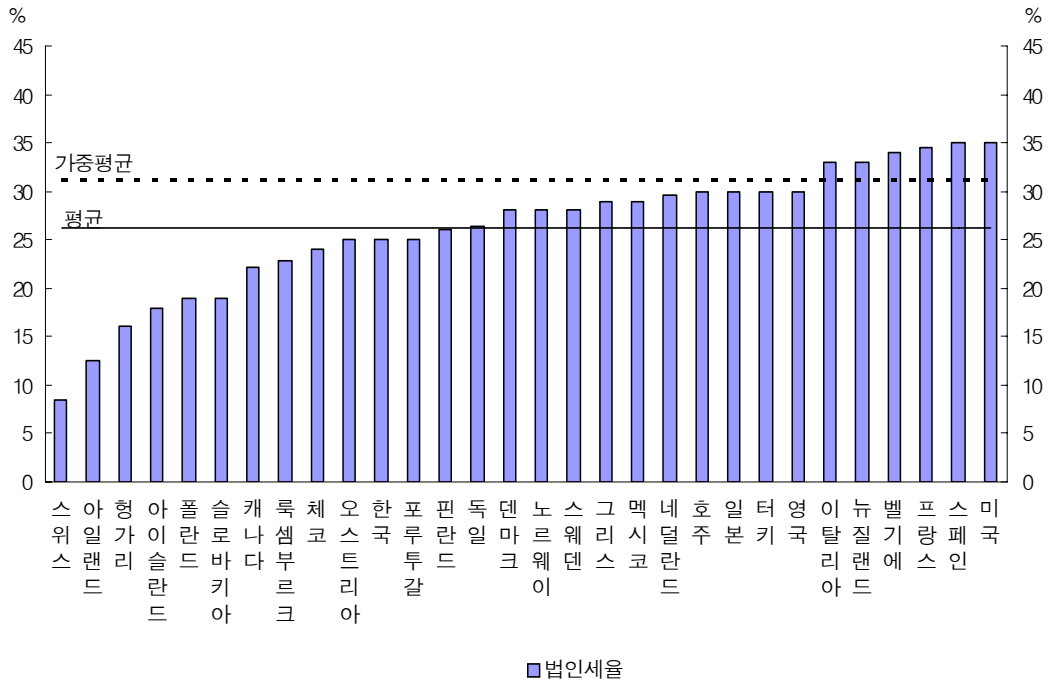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나. 법인소득세

- 우리나라 중앙정부 법인소득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 26.2%와 유사한 수준
 - 그러나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대만(25%), 홍콩(17.5%), 싱가포르(20%)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³⁾
 - 미국·일본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커서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교적 높은 명목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세율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 단일시장이 형성된 EU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3) 대만은 다시 2010년까지 홍콩 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며 싱가포르도 2007년 법인세율을 18%로 낮추고 GST를 2%p 인상하는 방안이 통과. 홍콩도 법인세율 1%p 인하안이 관보공고를 마치고 입법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음.

[그림 11-6]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2006)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법인세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율수준과 달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 법인세 부담은 GDP 대비 4.1%로 OECD 평균 3.7%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보다 높은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국가는 일본, 호주, 체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에 불과
 - 그러나 더욱 용이해진 기업의 국가간 이동을 고려할 때 높은 법인세 부담은 성장과 고용유지에 바람직하지 않음.

[그림 11-7]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200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명목세율 외에도 법인세 부담은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 감가상각제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효율적임.
 -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 감면액/(감면액+법인세 수입))은 17.2%로 영국은 55.1%, 캐나다는 28.5%, 미국은 23.4%보다 낮은 수준
 - 조세감면액 규모는 1997년 1.5조원에서 2005년 7조원으로 증가
 - 낮은 감면규모는 법인부문의 왜곡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세율 인하의 재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표 II-11> 주요국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수 대비) 비교

(단위: %)

국 가	2001	2002	2003	2004
캐나다	39.2	34.0	30.7	28.5
영 국	53.0	53.7	54.1	55.1
미 국	32.2	36.2	29.3	23.4
한 국	18.9	16.3	16.5	17.2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2000년대 이후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는데 이는 법인이익률(당기순이익/법인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
- 명목세율 인하, 각종 세액공제 제공 등으로 인해 평균세율(법인세액/당기순이익)은 연평균 6.2%씩 감소하였으나,
 - 법인이익률이 연평균 15.8%씩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자본귀속분)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추세는 약함.

<표 II-12> 법인부문의 크기, 이익률 그리고 평균세율

(단위: %)

	법인소득 비중 (법인소득/GDP)	이익률 (당기순이익/법인소득)	평균세율 (법인세액/당기순이익)	법인세 부담률 (부담세액/GDP)
2000	41.4	22.7	27.5	2.6
2001	39.0	26.7	26.6	2.8
2002	37.3	33.7	26.0	3.3
2003	36.4	34.4	23.8	3.0
2004	36.1	42.9	22.1	3.4
2005	34.7	47.3	19.9	3.3
평균증가율	-3.5	15.8	-6.2	4.9

주: 법인소득은 GDP 중 법인 귀속분으로 재산소득과 영업잉여의 합이며 당기순이익은 혼자법인의 기업회계상 금액 그리고 부담세액은 국세청 신고기준임. 따라서 법인세 부담률은 이전의 징수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

-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유지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갈 필요 존재
 - 법인세 부담 인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의 확대보다는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또한 세율 인하는 다른 국가와의 세율격차를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는 조세경쟁 상황 대처에도 바람직
 -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효과는 법인들의 이익규모 및 분포에 의존
 - 법인들의 이익수준이 낮거나 분포가 편중되어 있을 경우 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 고용효과는 제한적이므로 R&D 공제 등 특정행위와 연관된 제도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등의 노력도 중요

다. 부가가치세 등

- 부가가치세의 경우 1977년 도입 이래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가도 있고 반면 인하하는 국가도 있으나, 대체로 낮은 세율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는 추세를 보임.
 - 일반적으로 OECD의 평균세율은 1994년의 17.1%에서 2004년의 17.8%로 증가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 7%(일부 지역 15%), 일본 5%, 스위스 7.6% 정도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은 선진국들에 비해 효율적
 - 부가가치세수의 민간소비 비중과 부가가치세율의 비율로 정의되는 소비효율성(C-efficiency)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

-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수준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축소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 필요

<표 II-13> 주요 국가별 VAT 효율성(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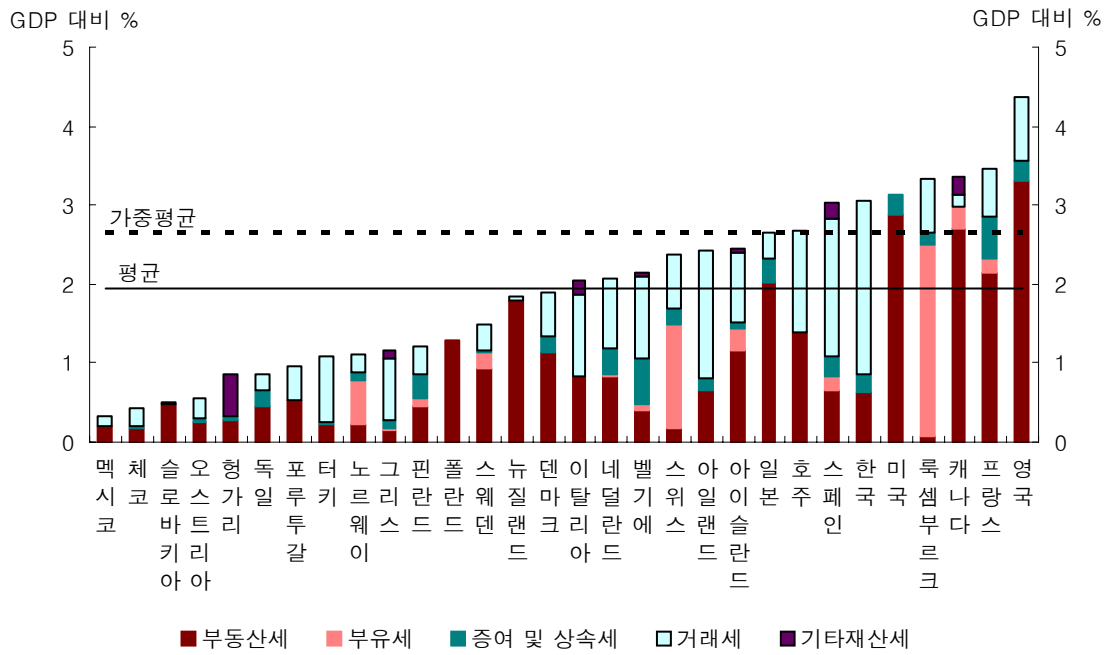
(단위: %)

	명목 VAT 세율	VAT 세수		C-효율성
		(민간소비 비중)	(GDP 비중)	
캐나다	7.0	4.8	3.5	0.68
일본	5.0	3.2	2.4	0.64
한국	10.0	6.9	4.6	0.69
프랑스	19.6	9.0	7.2	0.46
독일	16.0	8.3	6.5	0.52
이탈리아	20.0	7.6	6.1	0.38
영국	17.5	8.2	7.1	0.47
OECD 평균	17.7	9.2	6.9	0.54
유럽 평균	19.7	10.0	7.5	0.52

자료: 재정경제부 내부자료.

- 성장친화적인 세율인 주거자산에 대한 세수는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0.9%에 비해 낮은 수준
 - 전체 재산과세(부동산세, 부유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으로 구성) 수준은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9%(가중평균 2.7%)보다 높은 수준이나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2.2%)에 기인
 -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주거자산 포함) 과세수준은 일본 2.0%, 영국 3.3%, 미국 2.9%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 세부담 조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높은 세목이므로 신중한 접근필요

[그림 11-8] OECD 국가들의 재산과세 부담(200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Ⅲ. 해외조세 개혁동향

1. 전반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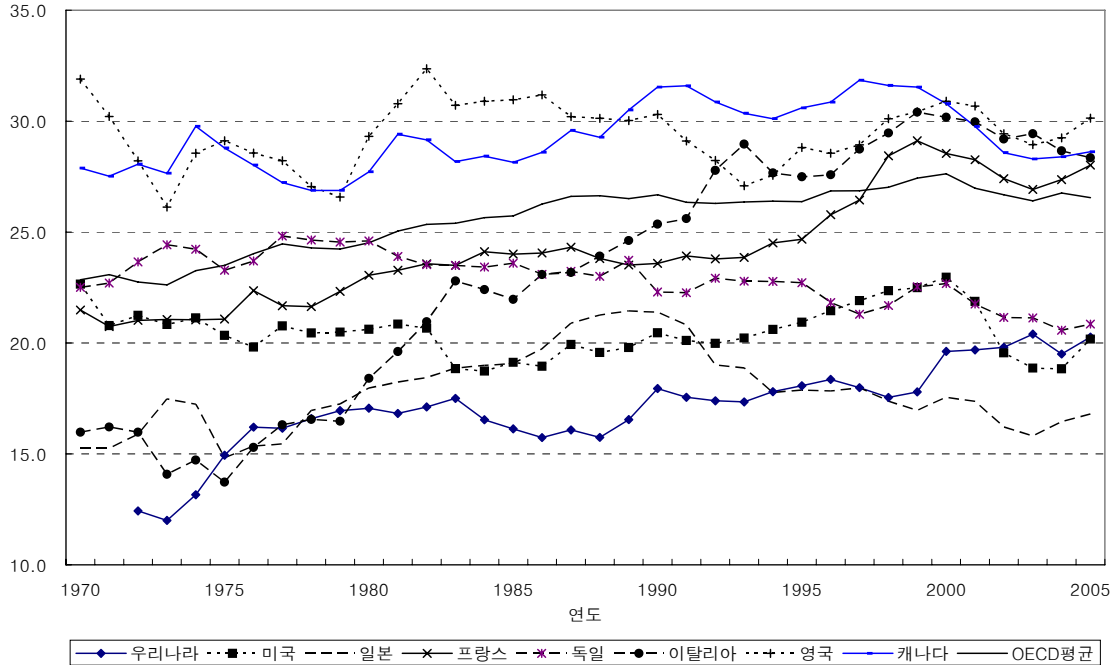
-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은 효율성 중심의 “낮은 세율-넓은 세원”으로의 개혁추진
 - 영국(1984년)과 미국(1986년)의 소득세 최고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이 “낮은 세율-넓은 세원”으로 조세개혁 추진
 - 이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을 축소
 - 그 결과 1980년대에 45% 및 65%에 달하던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에는 30% 및 50% 미만으로 낮아짐.

- 세원 확충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는 하였으나 상승추세는 지속
 - 2000년대 들어서는 상승하기만 하던 조세부담률이 정체 내지 소폭이나마 하락하기 시작
 -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자본, 기술,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여, OECD 30개국 중 1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15개국이 소득세율을 인하하였기 때문

- 2004년에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적자의 악화에 따른 세입증대 정책의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이 소폭 상승
 - EU 국가들은 시장통합에 따른 강화된 법인세율 경쟁으로 세원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법인세율 인하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에너지관련세를 확충하여 세수 확보

[그림 III-1]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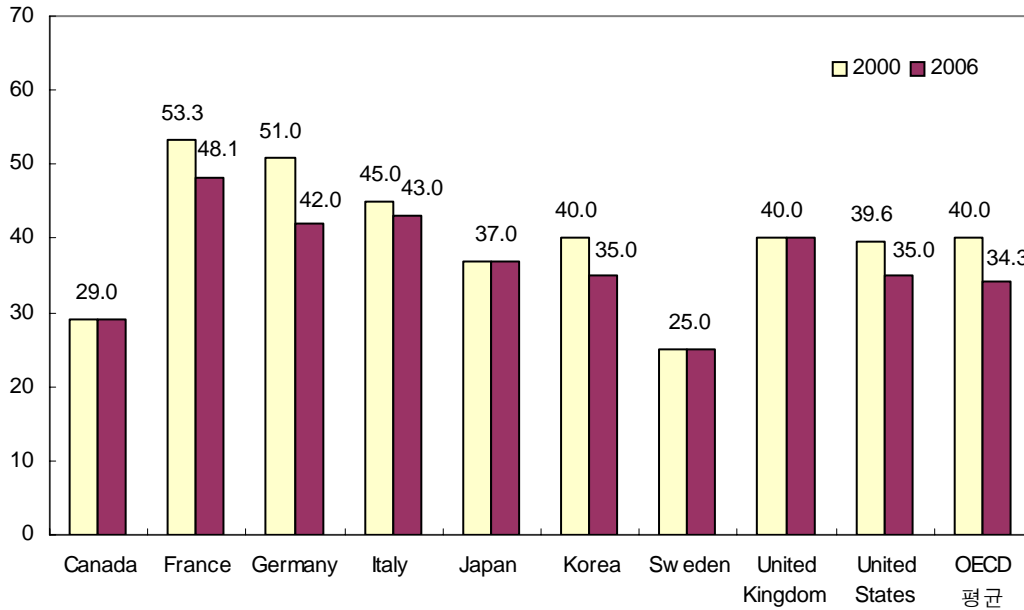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 평균이 2000~2006년 기간 중 5.7%p(40.0%→34.3%) 인하됨.
- G7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독일이 9.0%p(51.0%→42.0%)로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하였으며, 프랑스 5.2%p(53.3%→48.1%), 미국 4.6%p(39.6%→35.0%) 인하함.
 - 세율변동이 없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세율 인하 방안이 2007년 예산안으로 제안됨.
 -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최고세율이 37%에서 40%로 인상되었으나 이는 단일 지방소득세율의 적용을 조정한 것임.
-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최고세율을 5%p(40.0%→35.0%)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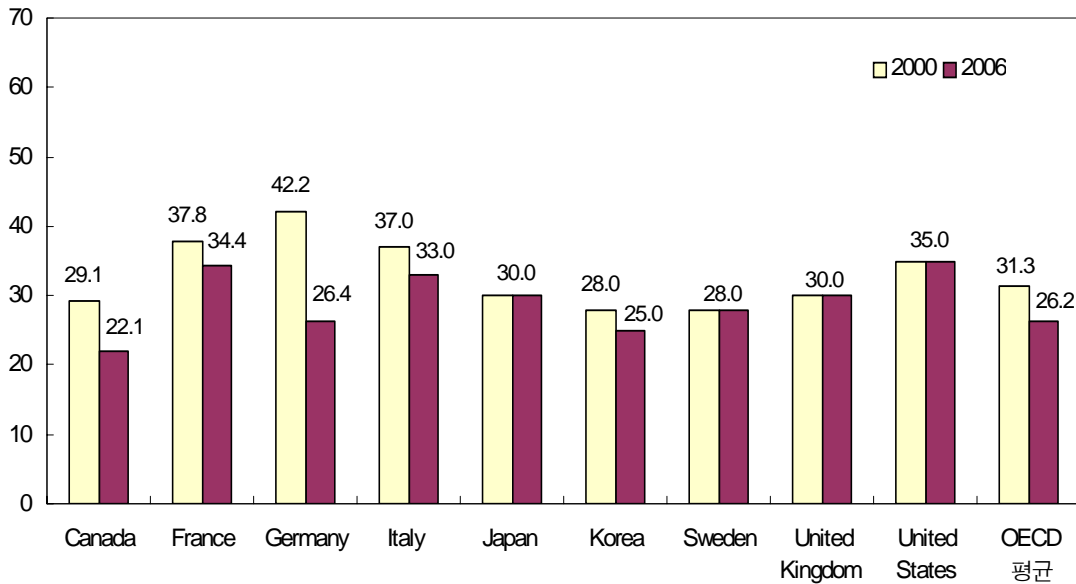
[그림 III-2] OECD 주요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변동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법인세 세율 인하도 두드러지는데, OECD 국가 평균 법정법인세율(중앙 정부)이 2000~2006년 기간 중 5.1%p(31.3→26.2%) 인하됨.
 - 동 기간 중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없음.
 - G7 국가 중 법인세율 인하 규모가 가장 컸던 국가는 독일(15.8%p)이었으며 캐나다(7.0%p), 이탈리아(4.0%p) 순임.
 - 우리나라도 동 기간 동안 3.0%p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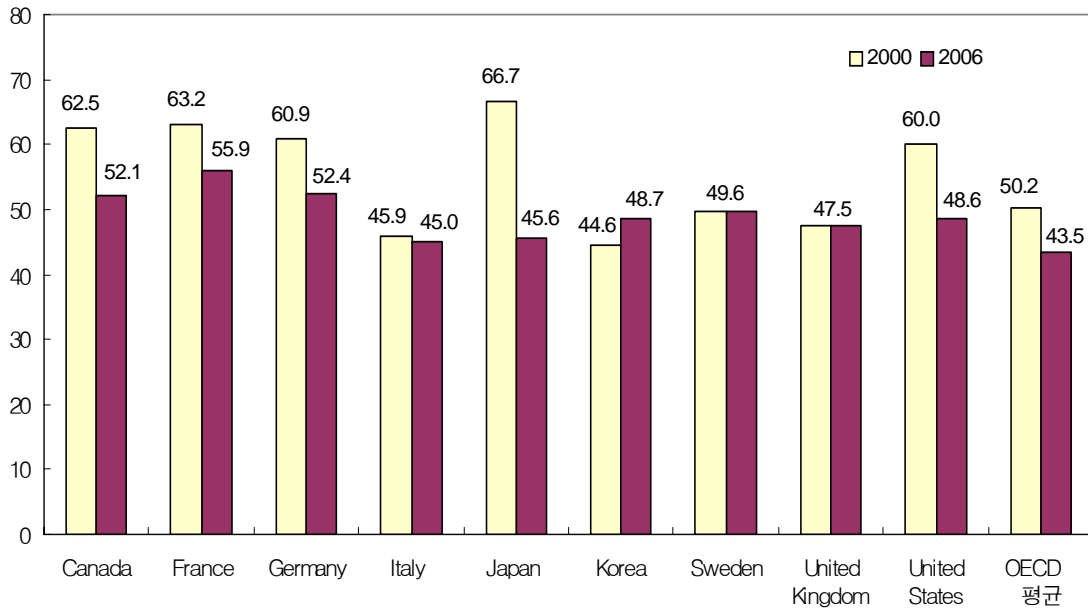
[그림 III-3] OECD 주요국의 법인소득세율 변동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거주자에 대한 배당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소득세율+법인세율, 이중과세 조정)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하되었으며, OECD 국가 평균으로는 2000~2006년 기간 중 6.7%p(50.2%→43.5%) 인하
 -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규모가 가장 컸던 국가는 일본(21.1%p)이었으며 미국(11.4%p), 캐나다(10.4%p) 순임.
 - 일본의 세율 인하는 2003년 도입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이나 양도이익에 대한 경감세율(10%) 적용에 따른 결과임.
 - 반면 우리나라는 4.1%p(44.6%→48.7%)로 상승하여 지분투자자 부담 증대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에 따른 부담증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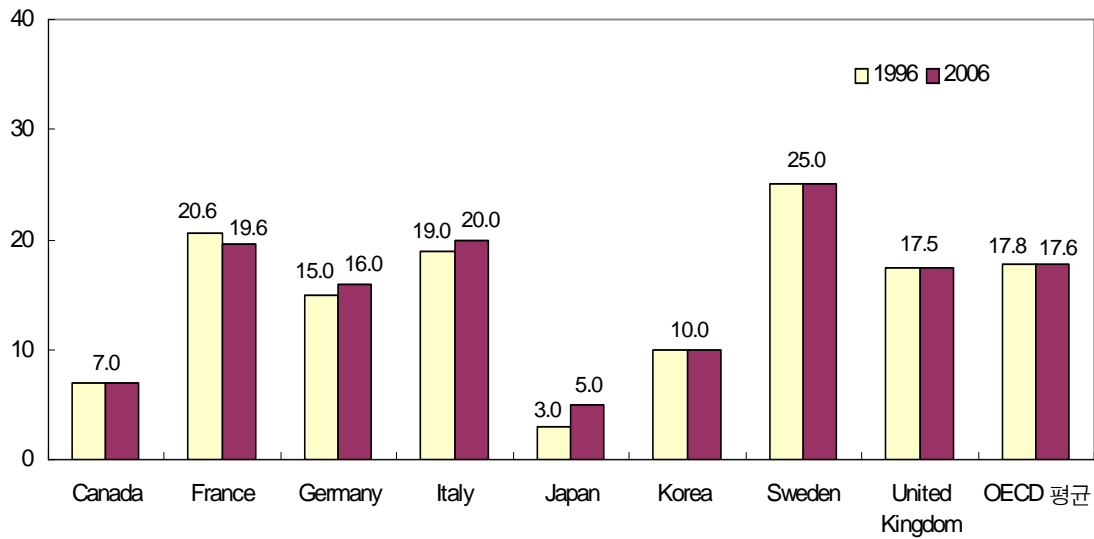
[그림 III-4] OECD 주요국의 배당소득세율 변동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혹은 일반소비세) 평균세율은 1996년 이래 거의 변화가 없음(17.8%(1996)→17.6%(2006)).
 -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 조달, 재정적자 해소, 연금보험료 인상 회피 등을 위해 1993년(14%→15%), 1998년(15%→16%) 등 2차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2007년에도 3%p 인상)
 - 영국의 경우 법인·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1979년(8%→15%), 1991년(15%→17.5%) 2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 프랑스의 경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1995년 18.6%→20.6%, 2000년 20.6%→19.6%)
 - 일본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가세율을 2%p(1997년 3%→5%) 인상

[그림 III-5] OECD 주요국의 소비세율(VAT) 변동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그 외 환경·복지 등의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부응하여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환경세 개혁(green tax reform)을 실행
 -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영국·스위스·네덜란드 등은 기존의 에너지세와는 별도의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
 - 독일·프랑스 등은 기존 에너지세제의 세율 인상을 단행

- 미국(1975년), 뉴질랜드(1996년), 프랑스(2000년), 벨기에(2002년), 영국(1999년) 등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조세제도로써 근로소득지원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 운영 중
 - 각종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가 혹은 추가근로의 인센티브가 약화됨에 따라 노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실업자 혹은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고취가 목적
 - 우리나라도 근로장려금제도로 2008년부터 소규모로 운영

2. 주요 국가별 조세개혁 동향

가. 미국

- 1980년대 2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을 인하한 바 있었으나, 클린턴 행정부(1992~2000년) 시기에는 재정적자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 추진
 - 최고세율 인상 : 소득세율 28%→36%, 법인세율 34→35%
 - 이러한 증세 및 재정지출 축소 정책과 더불어 IT투자 등에 따른 경제호황으로 인한 세입증가 등으로 1998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 반전

- 그러나 부시 행정부(2000년~현재) 시기에는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기하강에 대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최고세율 인하: 소득세율 39.6%→35%, 법인세율 35%→32%)을 2001년 시행
 -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2010년까지)
 - 동 정책은 경기회복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소득재분배 및 재정수지 악화의 부작용도 초래

- 2001년 및 2002년 감세정책
 - 2001년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11년 동안(2001~2011년) 총 1조 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정책(EGTRRA⁴⁾) 실시
 - 기존 5단계 소득세율을 6단계로 개편,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하
 - 2002년 3월 9·11 테러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인 조세지원제도(JCWAA 2002⁵⁾) 수립
 - 감세규모: 400억달러(2001), 400억달러(2002)

4)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5) Job Creation and Worker Assistance Act of 2002

□ 2003년 감세안

- 소비 및 투자진작, 실업자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감세안 발의 및 통과
- 2001년 EGTRRA의 소득세 감축일정 단축과 배당세의 잠정 폐지 추진
 - 감세규모는 향후 11년 동안(2003~2013년) 3,500억 달러

<표 III-1> 미국의 재정 및 경제 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4.9	△3.6	△3.1	△2.2	△0.8	0.4	0.9	1.6	△0.4	△3.8	△5.0	△4.7	△3.7
국가채무	75.4	74.6	74.2	73.4	70.9	67.7	64.1	58.1	58.0	60.3	63.4	64.0	63.8
경제성장률	2.7	4.0	2.5	3.7	4.5	4.2	4.4	3.7	0.8	1.6	2.7	4.2	3.6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 최근 부시 대통령이 세제간소화(Simple), 형평성 제고(Fair), 경제성장 증진(Pro-Growth)을 위한 세수중립적인 조세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2005년 1월)

- 이를 위해 구성된 조세개혁자문단이 2005년 11월, 소득·법인세 간소화 방안(Simplified Income Tax Plan) 및 성장 및 투자지원 방안(Growth and Investment Tax Plan)의 2가지 대안을 제시
- 소득·법인세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배당소득 비과세(이중과세 조정 목적), 자본이득세율 25%(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축소), 반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율 적용 등
- 성장지원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과세에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투자비 일시상각 그리고 개인의 자본소득(배당, 이자, 자본이득)에 대한 15% 분리과세 등

□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감세 등 GDP 1%에 달하는 감세정책 추진

- 소득세 감세정책은 최저세율을 단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며 법인세 부담은 가속감가상각 혹은 즉시상각을 통해 경감

나. 독일

- 1980년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 실시
 -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01년~'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 소득세율(2000년 22.9~51% → 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 → 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표 III-2> 독일의 재정 및 경제 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3.0	△2.3	△3.2	△3.3	△2.6	△2.2	△1.5	1.3	△2.8	△3.7	△4.0	△3.7	△3.9
국가채무	46.3	46.7	55.8	58.9	60.4	62.2	60.8	59.9	59.3	61.6	64.6	67.9	69.9
경제성장률	△0.8	2.7	2.0	1.0	1.9	1.8	1.9	3.5	1.4	0.1	△0.2	1.1	1.1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 2005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 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6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070억(유로) 수준

-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3월 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예정
 - 법인세율(부가세, 주 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

<표 III-3> 법인세 인하계획

	종전	개정(2008)
A. 연방 법인세율 (Corporate Income Tax)	25%	15%
B. 연방 법인세 부가세 (Solidary Surcharge)	1.375%	0.83%
C. 주 사업세율 (Municipal Business Tax)	12.275%	14%
A+B+C 총법인세율 (Total Average Tax)	38.65%	29.83%

다. 일본

- 1992년 시작된 장기불황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990년대에 세제개혁 단행
 -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및 누진구조 완화(10, 20, 30, 40, 50%→10, 20, 30, 37%)와 법인세의 세율인하(37.5%→34.5%→30%) 등 지속적인 감세 조치 시행(1994, 1998, 1999년)
 -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 세입이 부진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재정적자만 심화되는 부작용
 - 최근 들어서야 경기회복 등으로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되기 시작

- 2000년대 이후에는 경기진작을 위해 세율 인하보다는 R&D 세액공제 강화 등 보다 특성화된 정책수단을 이용
 - 세율 인하가 1990년대 후반 이미 이루어진 점과, 법인들의 경우 이익수준이 미미하여 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
 - 보다 투자 및 국내 고용효과가 있는 R&D 세액공제 방식 등을 이용

<표 III-4> 일본의 재정 및 경제 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2.4	△3.8	△4.7	△5.1	△3.8	△5.5	△7.2	△7.5	△6.1	△7.9	△7.7	△6.5	△6.5
국가채무	74.7	79.7	87.0	93.8	100.3	112.1	125.7	134.0	142.3	149.4	154.0	156.3	158.9
경제성장률	0.2	1.1	2.0	3.4	1.8	△1.0	△0.1	2.4	0.2	△0.3	1.4	2.7	2.4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 2006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구조를 개편(2007년 적용)
 - 5%/10%/13%의 세율구조를 지닌 지방소득세를 10% 세율로 단일화한 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세부담이 줄어드는 고소득계층의 세율은 인상
 - 개인소득세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과표구간이 2구간 늘어남(기존 4구간 → 6구간).
 - 저소득구간에 5% 세율구간과 고소득 40% 세율구간 신설

<표 III-5> 개인소득세의 세율구조

2006년 이전		2007년	
적용과세소득	세율	적용과세소득	세율
330만엔 이하의 금액	10%	195만엔 이하의 금액	5%
900만엔 이하의 금액	20%	330만엔 이하의 금액	10%
1,800만엔 이하의 금액	30%	695만엔 이하의 금액	20%
1,800만엔 초과	37%	900만엔 이하의 금액	23%
		1,800만엔 이하의 금액	33%
		1,800만엔 초과	40%

<표 III-6> 주민세의 세율구조

2006년 이전		2007년	
적용과세소득	세율	적용과세소득	세율
200만엔 이하의 금액	5%	일률	10%
700만엔 이하의 금액	10%		
700만엔 초과액의 금액	13%		

- 일본의 세제개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자문기구 세제조사회의 최근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3년도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세제’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5가지 기본관점을 제시
 - 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경제활동에 중립적인 세제를 기본
 - ②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조세의 불공평성을 발생시키는 세제상 모든 조치를 적정화
 - ③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간소한 세제
 - ④ 안정적인 세입구조 구축에 이바지
 - ⑤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세를 충실하게 확보
 - 이에 따라 2003년도 세제개편에 일본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IT투자 지원,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통합방안과 세율 인하 포함.
 - 또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거래 및 주식에 대한 세부담 인하와 세제단순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등록면허세(거래세) 경감도 포함.
- 2005년도 세제조사회의에서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 방안 검토

- 소비세제 분야에서는 소비세율 수준을 두 자릿수(10~15%)로 인상(현재 5%)하고 주류간 세부담 차이를 축소하고 환경세 도입을 검토
 - 소득·법인세제 분야에서는 소득세의 조세부담 수준의 인상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되, 법인세의 세율 인하에는 반대
 - 상속세제 분야에서는 상속세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생전증여 촉진을 위한 상속세 정산제도의 활용을 확대
 - 그러나 이러한 세제조사회외 증세방안에 대해 야당은 정부예산 삭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는 소비세 인상 등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방안을 비판
- 2006년에도 세출분야의 구조조정과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율 인상수준을 추계하여 제시한 재정제도 등 심의회(총리 자문기구)가 재무장관에게 제출한 「세입·세출 일체 개혁을 위한 건의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소요 충족에 필요한 소비세율은 12.5~15.5% 정도로 추계
- 2006년 6월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세출삭감을 선행한 후 필요시 소비세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사용할 것”임을 표명
- 2007년에 세제조사회외 권고는 법인세율의 경우 세율 인하보다 부분적 조세지원 강화, 개인 금융소득과세에 있어 형평성 확보 등을 포함
- 2003년 도입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이나 양도이익에 대한 경감세율(10%)제도는 기한 도래시 폐지
 - 상속세의 재분배기능 강화
 - 납세환경 개선을 위해 납세자번호제도 도입
 - 소비세의 사회보장재원 조달 역할 강화

라. 영 국

-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인 대처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 등을 위해 소득과세

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제전환을 추진

- 소득세율의 인하 및 누진도 완화(25~83%의 11단계→25~60%의 7단계)를 추진
 - 소득세율은 계속 인하여 1988년에는 25%·40%의 2단계로 단순화
 - 반면 부가가치세 세율은 인상(8%→15%)됨.
- 1984년에는 투자촉진 등을 위해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52%→1986년 35%)하되 과세베이스는 확대

□ 1990년대 초 집권한 메이저 보수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처 정부의 정책을 이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 및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시행

- 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35%→33%)하였고, 지방세인 인두세(Poll Tax)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러한 조세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2.5%p 인상(15%→17.5%)
- 1992년부터 소득세의 기본세율(25%)·할증세율(30%) 이외에 경감세율(20%)을 신설하여 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
- 1996년 및 1997년에는 소득세의 기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25%→23%)
- 동시에 영국 정부는 세출삭감 노력과 병행하여 1994년, 1995년, 1997년에 소득세의 과세베이스 재검토 및 탄화수소세 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 추진
- 그 결과 1993년 GDP 대비 7.9%에 달하던 재정적자가 1998년에 흑자로 전환

□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 정권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1997년 33%→31%, 1999년→30%(소규모법인 20%)) 단행

- 또한 2000년 과세소득이 1만파운드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초(超)경감세율 10% 적용, 2002년부터는 연간 이윤 1만/30만파운드 이하의 법인

- 에 대한 법인세율을 10%/20%에서 0%/19%로 인하
- 소득세의 기본세율 인하(2000년 23%→22%) 및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세율을 10%로 인하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다시 적자로 전환

□ 그 외 2000년부터 부부공제를 폐지하고, 2002년부터는 주택용자 이자공제를 폐지

- 인적공제로서, 과부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등을 폐지 및 개편하는 등 세원(tax base) 확대노력 지속

<표 III-7> 영국의 재정 및 경제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7.9	△6.8	△5.8	△4.2	△2.2	0.1	1.0	3.8	0.7	△1.7	△3.3	△3.2	△3.1
국가채무	49.6	47.8	52.7	52.5	53.2	53.7	48.7	45.7	41.1	41.3	41.9	44.2	46.8
경제성장률	2.4	4.4	2.9	2.7	3.2	3.2	3.0	4.0	2.2	2.0	2.5	3.2	1.7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 2007년 3월 영국 재무장관은 예산발표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소득세율 인하와 개별 소비세 인상을 제시

- 법인세율을 2008년부터 현행 30%에서 28%로 2%p 인하
 - 2009년까지 소규모 회사 법인세율(Small company tax rate)을 현행 19%에서 22%로 1%p씩 단계적 인상(2007년 20%, 2008년 21%, 2009년 22% 적용)
 - 이는 개인소득세 회피 목적의 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함.
- 개인소득세는 2008년부터 기본세율(Basic rate)을 현행 22%에서 20%로 2%p 인하하고, 현행 10%인 최저세율(Starting rate) 구간을 폐지

- 세수보전을 위해 연료세, 주세, 담배소비세는 인상
 - 연료세(fuel duty)를 2008년에는 리터당 £0.02 인상, 2009년 £0.018 인상
 - 맥주(£0.01/pint당), 과일주(£0.01/pint당), 와인(£0.05/병당), sparkling 와인(£ 0.07/병당)에 대한 소비세를 추가 인상
 - 담배소비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한 갑당 £0.11)

<표 III-8>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2007년		2008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최저세율 (starting rate)	£0 ~ 2,230	10%	-	
기본세율 (basic rate)	£2,230 ~ 34,600	22%	£0 ~ 34,600	20%
최고세율 (top rate)	£34,600 이상	40%	£34,600 이상	40%

마. 기타 국가

- 캐나다도 2007년 예산안을 통해 2012년에 G7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정세율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율 인하 추진(하원통과)
 - 법인세 연방세율을 현행 21%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인하
 - 법인부가세(연방소득세율의 4%)를 2008년부터 폐지
 - 주 법인세율(Provincial-territorial statutory rate)도 2012년까지 10%로 낮추어 총부담세율 25% 목표 제시
 -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2007년 38%(주세 포함)의 법인세율에서 약 13%를 낮추는 효과

<표 III-9> 연방법인세율 인하 계획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현행 · 계획된 세율	22.12	20.5	20.0	19.0	18.5	18.5
2008 감세율	22.12	19.5	19.0	18.0	16.5	15.0
절감세율 point	-	1	1	1	2	3

주: 2007년 세율인 22.12%는 1.12%의 법인부가세(Corporate surtax)가 포함된 것으로, 법인부가세는 2008년부터 폐지됨.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Economic Statement, Oct. 30, 2007, p. 75.

- 개인소득세의 가장 낮은 소득구간(현행 CAD 37,178)에 적용된 세율을 현행 15.5%에서 15%로 낮추어 2007년부터 소급하여 적용
 - 현행 15.5/22/26/29% 체계에서 15/22/26/29%로 변경
 -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캐나다의 재화 · 용역세(GST)의 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p 인하
- 스웨덴 정부는 현행 1.5%의 세율로 개인에게 부과되던 부유세를 2007년 말까지 폐지한다고 발표
- 부유세는 SEK1,500,000(부부는 2배)을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부과
- 그 외 많은 유럽국가들도 2007년에 법인세율 인하, 소비 및 환경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 이탈리아는 2008년 예산안에서 법인세율 인하 제시(33%→27.5%)
 - 네덜란드도 2008년 예산안에서 소비세율 인상(19%→20%), 연료소비세, 담배 및 맥주소비세 인상 제시
 - 2007년도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29.6%에서 25.5%로 인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p를 더 인하하는 방안 검토 중
 - 핀란드도 주세 및 에너지/탄소세 인상방안 제시
 - 덴마크도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및 에너지세 인상방안 제시

- 뉴질랜드도 법인세율 3%p 인하(33%→30%) 추진
-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거의 없었으며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세 등을 환경세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시행
 - 영국은 1996년 10월 쓰레기매입세, 2001년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도입 시행
 - 기후변화세는 2000년 3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발표된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me)을 통해 시행이 결정되었는데, 산업, 농업 및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과세대상
 -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 유황세, 및 질소세를 도입

3. 시사점

- 조세제도의 효율성 향상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소득관련 과세축소는 세계적 현상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특히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인세율 및 최고소득세율 인하가 지속적으로 추진
 - EU 단일시장의 영향으로 유럽국가 간의 기업 및 인력 유치경쟁 측면 존재
 - 세수 확보를 위해 소비세, 환경세 등의 역할은 강조 추세
 -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은 정체 혹은 완만한 변화추세
- 반면 세목 변화는 미미한 실정
 - 신규 세목 설치의 어려움 존재
 -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탄소세 등의 세목 신설이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당부문 기존세목의 변화 혹은 확대

IV. 조세개혁 방향

- 세계개편에서 정책목표가 될 수 있는 조세원리들은 다양
 - 국제적 경쟁환경에서 세수를 확보할 필요성
 - 경제적 효율성의 회복: 경제적 왜곡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고취
 - 형평성의 유지: 소득재분배 및 소득분산의 축소
 - 복잡성, 조세회피, 탈세축소를 통한 납세순응 개선

- 각 조세원리 간에는 상충관계가 있으며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대전제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우월한 원리는 없음.
 - 조세제도 개혁에 있어 각 원리간 상충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남.
 - 조세수입 확보 vs 경제적 효율성
 - 형평성 vs 효율성
 - 조세제도의 복잡성 vs 세수 확보 및 형평성
 - 조화/경쟁에 대한 외부압력 vs 국가 자립
 -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추구하여야 할 원리들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

- 세계개편시 추구할 조세원리는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효율성·형평성·단순성 등 상충되는 각 원리들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정책결정에 달려 있음.
 - 최근 OECD 국가의 세계개편 동향을 보면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추세
 - 2006년 호주 연방정부는 단순화 및 조세수입 확보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조세원칙임을 제시
 - 특히 단일시장이 형성된 EU지역의 경우, 국가경쟁력을 중시하여 “넓은

세원-낮은세율”과 “자본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원 전환”이 활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필요자원 확보를 기본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세계개편의 원리가 되어야 함.
 - 소규모 개방 국가인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
 -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필요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부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의 조달을 위한 세원 확대 혹은 조정도 필요

-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세부과는 시장참가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므로 감세정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감세정책은 정부의 활동영역을 보다 효율적인 민간부문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활력을 증가시키기 때문
 - 그러므로 정부지출 축소를 통한 감세정책의 추진이 필요
 -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하에 세출예산을 10% 절감하기로 함으로써 감세정책 추진의 여건은 조성

-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하고 낮은 세부담”이라는 성장친화적 조세구조를 형성해야 함.
 - 먼저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낮추어 갈 필요
 - 최근 2년간 나타난 초과세수 중 일시적 요인이 아닌 부분은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환류하는 것이 성장에 바람직
 - . 조세부담률: 19.5%(2004) → 22.7%(2007)
 - 그 외 추가적인 세부담 인하정책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전반적인 세부담 인하규모는 중장기적인 정부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함

- 낮은 세부담 수준을 가능한 한 단순한 제도로 구현할 필요
 -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를 위해 “낮은 세율-제한된 공제“의 형태로 단순화한 제도구성이 중요
 - 특히 낮은 세율은 대외 자본유치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

□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감소,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 그리고 효율성에 기초한 세원의 역할 조정 등이 필요

- 재정지출의 축소를 통한 세부담 경감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외국의 지출감소 사례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지속적인 축소는 어려움
- 높은 수준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여 추가적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도를 단순화하므로 납세관련 비용 축소에도 효과적
- 재원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원의 역할 조정도 필요
 - 경제적 왜곡효과가 높은 세원의 비중을 축소하고 그렇지 않은 세원의 비중은 증대
 - 세부담이 높아지는 세원의 경우 정치적 저항이 높으므로 전반적 감세 정책과 함께 세원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세부담 수준의 인하는 세목의 효율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약화되는 형평성은 다른 정책으로 보완

- 경제적 왜곡효과가 큰 법인과세 등 자본과세는 그 수준을 외국과의 경쟁 정도를 감안하여 낮추어 나가야 하며,
 - 노동과세도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 추세를 완화할 필요
- 감세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평성의 약화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한 재정지원이나 조세정책을 통해 보완할 필요
 - 지원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광범위한 조세지원보다 소득재

분배에 효과적이기 때문

-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지원대상이 특정된 제도의 역할 증대도 효율성과 형평성 양 측면에서 필요

□ 대표적 자본과세인 법인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증대를 위해 낮추어 갈 필요

- 법인의 세부담이 GDP 대비 4.1%(2005년)로 30개 OECD 국가 중 7위 수준(OECD 평균 3.7%).
- 경감방법으로는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의 확대보다는 법인세율 인하가 바람직
 - 다른 국가와의 세율격차를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는 조세경쟁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
 - 유럽지역에 이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국가도 공격적으로 법인세율 인하(16.5~18%)를 추진
-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등의 노력도 중요
- 또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는 법인들의 이익규모 및 분포에 의존하므로 이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
 - 법인들의 이익수준이 낮거나 분포가 편중되어 있을 경우 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 고용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R&D 공제 등 특정행위와 연관된 제도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세율인하보다 R&D 조세지원 중심의 정책 실시

□ 동시에 법인세제 선진화 및 감면제도 합리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법인세제 선진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연결납세제도의 정비가 필요
- 감면제도 합리화를 위해 불필요한 감면항목을 축소하고 투자관련 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

- 소득세 부담증가의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전반적 세율 인하가 노동시장 왜곡 축소, 자본투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 소득세 부담증가는 상대적으로 좁은 납세자계층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이 편중된 가운데 2007년 세수는 20.3조원으로 18.7% 증가

- 소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납세자 비중 증대 등 구조개선 방안과 동시에 추진할 필요
 -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누진율 구조하에 서도 좁은 과세기반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

-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세원이나 세율변화에 따른 과급효과가 크고 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낮아 세율 변화는 지양
 -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노력을 통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
 - 안정적 세수입 확보의 관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할 경우 다른 세목의 세부담을 크게 인하하는 데는 한계
 - 그러나 환경, 건강 관련 개별소비세의 역할 증대는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에너지관련 세제의 경우,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 및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에너지복지 등 직접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에너지산업 및 일반산업이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 기존의 산업경쟁력 측면을 감안한 조세정책을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산업생산구조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해 에너지 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OECD(2008), Tax and Economic Growth, ECO/CPE/WP1(2008)4.

OECD(2007), *Economic Outlook*.

OECD(2007), *Revenue Statistics*.

OECD(2007), “Fundamental Reform of Corporate Income Tax,” *OECD Tax Policy Studies*, No. 16.

OECD(2006),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OECD Tax Policy Studies*, No. 13.

Owens, Jeffery(2006), “Fundamental Tax Refor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ational Tax Journal*, Vol. LIX, No. 1.

Reed, W. Robert (2008), “The Robust Relationship between Taxes and U. S. State Income Growth,” *National Tax Journal*, Vol. LXI, No. 1.

Warren, Neil(2007), “Taxation in 2015? What can be expected and why?, ” Korea and the World Economy Conference VI.